증권저축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 (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) | 제3조 (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) |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개정사항 반영 |
| ①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 | ①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 | |
| 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| 득세법에 의한 거주자(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| 소득요건 추가 |
|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 |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 | |
| | 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| |
| |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| |
| | 하는 자이어야 한다. | |
| 1. 만 60세 이상인 노인 | 1. 만 65세 이상인 노인 | 연령조건 변경 |
| 2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 2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 |
| 3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| 3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| |
| 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 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| |
| 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 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 |
|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|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| |
| 5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| 5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| |
| 6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| 6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| |
|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|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| |
| 7.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| 7.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| |
|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|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| |
| 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2019. 12. 31. 까지 가입 | 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2020. 12. 31. 까지 가입 | 가입기한 변경 |
| 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, 기존계좌에서 세 | 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, 기존계좌에서 세 | |
| 금우대증권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. | 금우대증권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. | |
|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 |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 | |

| 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없다. | 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없다.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④ 신규 저축가입 시 『비과세종합저축』으로 신 | ④ 신규 저축가입 시 『비과세종합저축』으로 신 | |
| 청해야 하며, 통장이나 카드의 표지·내지 또는 | 청해야 하며, 통장이나 카드의 표지·내지 또는 | |
| 거래내역서에 『비과세종합저축』이라는 문구를 | 거래내역서에 『비과세종합저축』이라는 문구를 | |
| 표시하여야 한다. | 표시하여야 한다. | |
| | | |
| | 부 칙 | 부칙 추가 |
| | 이 약관은 2020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 | |